

미국, 2007 농업법 제안서 주요내용

김 상 현*

2007년 1월 미국 농업부(USDA) 조한스(Mike Johanns) 장관은 2007년 농업법 제안서를 발표했다. USDA는 이번 농업법을 제안하기까지 총 52회의 농업법 포럼(Farm Bill Forums)이 개최하여 약 4,0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 의견들을 종합 분석하여 농업법 제안서에 반영하였다. 2007년 농업법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1. 품목별 지원제도

DDA 농업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가격보전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의 지급 요건이 가격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실제 경영조건을 반영하고,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다. 가격기준 지불 아래, 작물손실로 단수가 감소하는 경우 농가는 과소 보상을 받는 반면에 생산증대로 인해 단수가 증가하는 경우 농가는 과대 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새롭게 도입된 소득기준 지불방식은 최적 목표소득을 결정하는데 작물단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제안서는 정책 대상품목에 대한 마케팅지원융자제도(Marketing Assistance Loan Program)에 대한 개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법규는 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sh3615@krei.re.kr 02-3299-4369

수수, 밀, 면화, 쌀, 대두와 기타 주요 작물에 대한 융자단가(loan rate)와 최저가격(price floors)을 설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하는 높은 수준의 최저가격은 생산을 왜곡하며, 가격하락을 초래했다. 융자단가는 2002년 농업법의 목표가격을 상한으로 5개년 올림픽 평균가격의 85%로 설정하여 하향조정하고 있다 <표 1>. 이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보조수준 대신에 시장가격에 반응하여 농가들이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표 1 2007 농업법의 융자단가

품목	단위	현행	2007년 농업법 제안	
			2008-12년 평균	최대
밀	\$/부셸	2.75	2.58	2.58
옥수수	\$/부셸	1.95	1.89	1.89
수수	\$/부셸	1.95	1.89	1.89
보리	\$/부셸	1.85	1.7	1.7
귀리	\$/부셸	1.33	1.21	1.21
면화(Upland)	\$/파운드	0.52	0.457	0.5192
면화(ELS)	\$/파운드	0.7977	0.7965	0.7965
쌀	\$/100파운드	6.50	6.50	6.50
대두	\$/부셸	5.00	4.92	4.92
기타 유지종자	\$/파운드	0.093	0.087	0.087
땅콩	\$/톤	355	336	350
건완두	\$/100파운드	6.22	5.08	6.22
렌즈콩	\$/100파운드	11.72	10.45	11.72
병아리콩	\$/100파운드	7.43	7.43	7.43
양모(Graded)	\$/파운드	1.00	0.55	1.00
양모(Nongraded)	\$/파운드	0.40	0.22	0.40
염소털	\$/파운드	4.20	1.92	4.20
꿀	\$/파운드	0.60	0.60	0.60

또한 직접지불의 허점을 보완하며, 지불한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농가들은 3경영체 규정(3-entity rule)을 적용하여 직접지불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농업법은 3경영체 규정을 없애고, 한 경영체에 대해서만 직접지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불 한도는 36만 달러로 제한된다.

한편 농가에 대한 품목별 지원 대상 요건은 총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에 따라 결정되며, 기존 AGI의 상한기준이 25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하향조정 된다. 즉, 이번 농업법에 따라 연간 20만 달러 이상의 AGI를 버는 농가들은 품목별 지원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2004년도 자료에 따르면, 총 납세자의 97.7%가 20만 달러 미만의 AGI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경보전정책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정책을 통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78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습지보전계획(Wetlands Reserve Program, WRP)의 대상면적은 230만에서 350만 에이커로 확대됨에 따라 총 25만 에이커가 매년 등록하게 될 것이다.

이번 농업법은 비용분담계획(Cost-Share Program)을 환경질개선장려계획(Environment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에 통합하고, 지역수질개선계획(Regional Water Enhancement Program, RWEP)을 신설하여 42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새롭게 조정된 EQIP는 환경보전 정책의 효율성과 환경혜택을 증가시키도록 정책의 신축성을 제고하게 된다. 새롭게 도입된 RWEP는 지역차원에서 수질을 향상시키는 종합대책이며, 대규모 수질보전사업을 통합하도록 비용분담계획을 촉진함으로써 연방정부의 환경보전 이행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환경보전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은 현행 적용대상 면적을 유지하며, 환경의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지원혜택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 계획은 또한 바이오에너지(bio-energy) 생산에 활용한 토지를 우선순위에 두어 중점 관리하게 된다.

3. 바이오 에너지 정책

2007년 농업법 제안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셀룰로오스 에탄올 정책 사업에 16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관련 제품연구에 5억 달러가 배정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자, 농민, 기업가들은 작물의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대체에너지의 생산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통합하려는 조치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구, 효율성개선지원계획 등에 대해 5억 달러가 지원된다. 이 계획은 농민, 농장주, 농촌 소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사업에 적극 투자하게 된다. 또한 농촌지역의 셀룰로오스 에탄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에 21억 달러의 융자보증이 지원된다.

4. 농촌개발

농업법 제안서는 미 농업부의 농촌개발계획(Rural Development Program)을 강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대한 현 정부의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1,200 여개 이상의 농촌지역 공공병원(Rural Critical Access Hospital)을 복구하데 16억 달러의 보증융자가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수자원 개발, 폐기물 처리 등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에 5억 달러의 유무상 융자계획이 포함된다.

5. 기타 정책

2007년 농업법 제안서는 과일과 채소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5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특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에 1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식물배양, 유전공학 및 계놈 관련 기초 연구사업을 활성화하여 작물 특성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게 된다.

과일과 채소 구매를 촉구함으로써 영양지원계획(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을 증진하는데 32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 예산은 전국학교급식지원계획(National School Lunch and Breakfast Program)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기타 영양지원계획의 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과일과 채소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인의 식생활 지침(Dietary Guideline for American)에 근거한 식단을 제공하는데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번 농업법 제안서는 무역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 4억 달러를 배정하여 기존 농산물 시장을 유지, 확대 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역 관련 시장접근계획(Market Access Program)에 대한 예산이 2억 5,000만 달러까지 증액된다. 이와 함께 USDA와 농산물무역 관련 국내 비영리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관측과 시장조사연구와 같은 해외 유통 및 관측 관련 사업비용을 분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07년 농업법 제안서는 지난 5년 동안의 정부 예산적자를 반영하고 있으며, 2002년 농업법보다 100억 달러가 적은 예산(특별 재해보조 제외)을 배정하고 있다. 반면, 2002년 농업법이 2012년까지 연장될 경우의 예상 지출액보다 약 50억 달러가 증액된다<표 2>.

표 2 2007년 농업법 제안서에 따른 예산 추정 : 2008~2017년

단위 : 100만달러

농업법 주제별 항목(Title)	현행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대비 농업법 제안서의 변화 추정
품목지원	74,566	-4,494
환경보전	48,698	7,825
무역	2,000	389
영양지원	438,608	467
신용	a	0
농촌개발	a	585
연구지원	na	1,500
산림	na	150
에너지	0	978
기타	54,641	-2,450
총예산	618,513	4,950

주: a는 자유재량예산 계정(discretionary account), na는 베이스라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타 베이스라인 혹은 기타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임.

참고자료

USDA. USDA's 2007 Farm Bill Proposals. Fact Sheet: A Commitment to Rural America. Release No. 0019.07. 발췌정리